

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5월 1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5월 1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2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7년 5월 15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 이정의)

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 관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품목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품목을 구체화(안 제20조의2)
-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(안 제40조제4호)
  - 건축물 매각 기준일 : 2003년 12월 31일 → “2012년 12월 31”일로 변경
- 사용료, 대부료, 매각대금, 교환차금, 변상금,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 등 변경(안 제20조, 안 제35조, 안 제38조, 안 제38조의2, 안 제63조, 안 제63조의2)
  - 이자율 연 4퍼센트→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”로 변경

- 공유토지의 분필시 감정평가의뢰 범위 확대(안 제66조)
  - 감정평가 의뢰기관을 감정평가법인에서 “감정평가사”까지로 확대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보면
  - 안 제20조, 안 제35조, 안 제38조, 안 제 38조의2, 안 제63조, 안 제63조의2에서는 사용료, 대부료, 매각대금, 교환차금, 변상금,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각각 변경 규정하였고
  - 안 제20조의2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음.
  - 안 제40조제4호에서는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였고
  - 안 제66조에서는 공유토지 분필시 감정평가의뢰 범위를 확대하였음.
- 검토의견
 

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,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 완화 및 공유토지 분필시 감정평가의뢰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,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5항 중 “영 제14조제6항”을 “영 제14조제7항”으로, “연 4퍼센트의”를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동으로 생산·전시”를 “생산·전시”로, “있다”를 “있으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」 제2조1호에 따른 군수의 인증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
2.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

제35조제3항 중 “연 4퍼센트의”를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연 4퍼센트의”를 각각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”으로 한다.

제38조의2 중 “연 4퍼센트의”를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

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”  
으로 한다.

제40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2003년 12월 31일”을 “2012년 12월 31일”로  
하고,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“2003년 12월 31일(「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 
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, 법률 제7698호, 2005. 11. 8)”을  
“2012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2003년 12월 31일”을 “2012년  
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63조제2항 중 “연 4퍼센트의”를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 
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”  
으로 한다.

제63조의2 중 “연 4퍼센트”를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 
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”로  
한다.

제66조 후단 중 “감정평가법인”을 “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”로 한다.